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2-278호

마 음 에 온 대 립 건 설 공 사 정 기 안 전 점 검 수 행 기 관 지 정 공 고

「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, 시행령 제100조의2」 및 「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87호의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에 따라 「마음에온 대립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」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8일

제 주 특 별 자 치 도 개 발 공 사

1. 공 고 명 : 마음에온 대립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

2. 시행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2팀

3. 접수기간 : 2022.8.8.(월) ~ 2022.8.17.(수)

4. 마음에온 대립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

○ 공 사 명 : 마음에온 대립 건설공사

○ 발 주 자 :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
○ 감 리 자 : (주)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

○ 시 공 자 : (주)도현종합건설

○ 사업개요

1) 위 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-10외 2필지

2) 규 모 : 통합공공임대주택 70세대, 지하2층/지상9층 1개동

3) 면 적 : 건축면적 1,015㎡, 연면적 8,425㎡

○ 수행 과업 : 건축물 정기안전점검

○ 용역 기간 : 착수일로부터 ~ 2024. 11. (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)

○ 정기안전점검 주요내용

1)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1항1조.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

2) 정기안전점검 세부사항

구분	점검대상	횟수	단가	금액
건설기계	· 천공기(높이 10미터 이상)	2회	1,300,000원	2,600,000원
	· 타워크레인	3회	1,300,000원	3,900,000원
가설구조물	·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	2회	1,300,000원	2,600,000원
	·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	2회	1,300,000원	2,600,000원
소계		9회	(부가세별도)	11,700,000원
			(부가세포함)	12,870,000원

5. 참가자격
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
-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

연번	업체명	등록분야	소재지	등록명부 유효기간
1	(사)한국건설안전협회	종합	서울	등록명부 게시일부터 2023.04.30.까지
2	(주)엠에스구조기술사사무소	건축	제주	
3	경인엔지니어링(주)	건축	경기	
4	주식회사 바로구조 건축사사무소	건축	제주	
5	(주)부성이엔씨	건축	제주	
6	주식회사 삼부구조엔지니어링	건축	제주	
7	용우종합건설 주식회사	건축	제주	
8	(주)우리안전기술원	건축	전남	
9	(주)원우구조	건축	서울	
10	(주)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	건축	제주	
11	(주)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	건축	제주	
12	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	건축	제주	
13	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	건축	제주	

6. 제출서류

- 제출기한 : 2022.8.8.(월) ~ 2022.8.17.(수)
- 제출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2팀
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330 세미양빌딩 C동 1층 개발사업본부 개발2팀)
- 제출서류 : 마음에온 대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참조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원본 및 스캔본 제출)
(※ 등기우편의 경우,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.)
- 메일주소 : since225@jpdco.kr
- 연락처 : 064-780-3588 (개발2팀 오승민 대리)

7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

- 평가방법 : 마음에온 대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에 따름
- 업체선정
 - 1)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
 - 2)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자체 평가 후 지정
 - 3)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용역수행 실적(건수 또는 금액)이 큰 업체로 선정

8. 기타사항

-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.
- “가”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.
-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시공자와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.
-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.
-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를 제출(바인딩 또는 제본)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(www.jpdc.co.kr)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.